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병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90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6.

발 의 자:김병기·강준현·이정문

서영교・김진표・전용기

송갑석 · 송영길 · 인재근

민병덕 · 김병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성급 장교는 정원에 따라 지정된 직위에 보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장군인력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운용하도록 규정하고있음.

그런데 이에 따라 수년간 장성급 장교직위의 공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인력의 유연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이에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의2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 장교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 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6조의2(장성급	장교의	보직	제16조의2(장성급 장교의 보직
등) ①・② (생	략)		등) 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성급
			장교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
			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
			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장교의
			계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
			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
			<u>할 수 있다.</u>